

審 查 報 告 書

2002. 1. 18
총무위원회

1. 審 查 經 過

- 가. 提出日字 : 2002. 1. 8
- 나. 提出者 : 瑞山市長
- 다. 回附日字 : 2002. 1. 10
- 라. 上程日字 : 2002. 1. 18

2. 提案說明要旨(提案說明 : 稅務課長文哲柱)

가. 提案理由

- 등록문화재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 신설 및 최근 상승되고 있는 전·월세의 안정을 위하여 임대주택부속토지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하려는 것임.

나. 主要骨子

- 등록문화재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 신설
 -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100을 경감
- 임대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 확대
 - 전용면적 60㎡에서 85㎡로 확대

3.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旨

- 본 개정 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의 개정과 최근상승되는 전·월세의 안정을 위하여 중앙의 표준안에 의거 감면범위를 확대 시행하려는 사항으로서
- 주요 검토내용은
 - 지정문화재가 아니며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만한 시설물중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하고
 - 임대주택의 공급확대로 일반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서 이는,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본 개정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임.
 - 다만, 금번 개정하는 내용의 일부중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로 서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임대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시책은 무엇보다도 신속히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조례개정 표준안이 접수(2001. 2. 10)된지 1년여가 지나서 뒤늦게 조치하는 것은 바람직한 행정처리가 아니라고 사료됨.

4. 主要質疑 및 答辯要旨 : 생략

5. 討論 및 小數意見 : 없었음

6. 審査結果 :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 24/ 호
의 결	2002. . .
년 월 일	(제 회)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년월일	2002. 1. 8.

서산시시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4/
----------	-----

제출년월일 : 2002. 1. 8.

제출자 : 서산시장

1. 개정이유

등록문화재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 신설 및 최근 상승되고 있는 전·월세의 안정을 위하여 임대주택부속토지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등록문화재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 신설

-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100을 경감

나. 임대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 확대

- 전용면적 60㎡ 에서 85㎡로 확대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세법제9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 행정자치부 표준안

나. 예산조치 : 필요없음.

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 의견접수 사항 없음(입법예고 2001. 9. 25)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 ② 문화재보호법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를 경감 한다.

제12조제3호중 “60제곱미터”를 “85제곱미터”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식계획세를 면제한다. 1 ~ 3 (생략)</p> <p><신설></p> <p>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생략) 1 ~ 2 (생략) 3. 전용면적 <u>60제곱미터</u>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한다.</p>	<p>제10조(문화재에 대한 감면)① ----- ----- ----- -- 1 ~ 3 (현행과 같음)</p> <p>② <u>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를 경감한다.</u></p> <p>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전용면적 <u>85제곱미터</u> 이하인 임대목적의----- ----- ----- ----- -----</p>